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제출연월일: 2022. . . 번 호 제 출 자: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시민의 영상·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을 증진하여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시설 및 사업, 휴관일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다. 이용료 및 수강료, 감면 및 반환,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 제9조, 안 별표)

라. 위탁운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8조, 「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」제2조

「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영상·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상미디어센터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영상미디어센터"란 시민의 영상·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·영화 관련 문화와 산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, 제작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 을 말한다.
- 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하는 영상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"구미영상미디어센터"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964-451에 둔다.
- 제4조(시설 및 사업) ① 센터는 상영관, 스튜디오, 교육실, 편집실, 사무실, 기자재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.
 -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

- 2. 영상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영상 산업 생태계 활성화
- 3. 영상 ·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
- 4. 우수 영상물 감상을 위한 상영관 운영
- 5. 영상 · 미디어 관련 교류 · 협력 ·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
- 6.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하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휴관일)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.
 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
 -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
 - 3. 그 밖에 시설·장비의 유지·보수·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
 - ② 제1항 단서·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·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·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 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·지 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.
- 제6조(이용료 및 수강료)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(이하 "이용료등"이라 한다)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용료등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면제

- 가.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
- 나. 창작 목적, 센터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50 퍼센트의 범위 내 갂경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대 상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마. 65세 이상인 사람
 - 바.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 정의 부모 및 자녀
 - 사.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
 - 아.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
- 자.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(이용료등의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.
 - 1.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
 - 2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·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

- 3. 모집정원 미달, 시설·장비의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- 4. 이용자가 시설·장비의 이용 및 수강료를 이용 전일 또는 교육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
- 제9조(이용 제한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2.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
 - 3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4.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0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,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를 준용한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이용료 및 수강료(제6조 관련)

1. 시설 이용료 및 대관료

	시 설 명		단 위	금 액	비고
교	육	실	1시간	・1석: 3,000원 ・전체: 30,000원	
상	영	관	2시간	・기본 : 30,000원 ・추가 : 10,000원(1시간)	
1 인	스 튜 ۱	디 오	1시간	• 10,000원	
라디	오 스튜	디오	1시간	• 10,000원	
편	집	실	1시간	・1석: 3,000원	

가. 부가세와 냉 난방비 포함 가격이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
2. 장비 이용료

장 비 종 류	단 위	금 액	비고
카 메 라 등 각 종 장 비	1일	2,000원 ~ 100,000원	

- 가.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,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.
- 나. 개별 장비의 이용료는 장비 종류별 금액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차등 하여 정한다.
- 다. 해당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자에게 대여한다.
- 라. 보유 장비 중 일부를 센터 교육 전용 사용 등 시장이 필요한 경우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3. 수강료 및 입장료

구 분	단 위	금 액	비고
교육 프로그램 수강료	1시간	무료 ~ 10,000원	
영화 상영시 입장료	한 편	무료 ~ 10,000원	

- 가. 부가세를 포함한다.
- 나.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초빙, 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별도의 수강료를 산정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「지역문화진흥법」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 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□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

- 제2조(생활문화시설의 범위)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 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. [개정 2021.6.22]
- 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- 2.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
- 3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

- 4.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(이하 "생활문화센터"라 한다)
- 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□「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

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.

- 1. 생활문화센터 :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
- 2. 지역영상미디어센터: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
- 3. 지역서점: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(서점 전용면적의 1/10)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, 저자초청 특강,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

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재정수반요인
 -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추진(안 제10조)
- 2. 비용추계의 전제
 -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직원 인건비, 운영비, 시설 수리비 등 기타비용 반영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인건비, 운영비 등	558	574	591	608	626	2,957

4. 비용추계 상세내역

○ 1차년도(2022년) : 558백만원

가. 인건비(총 5명) : 150백만원

나. 운영비 : 331백만원

- 사무관리비(편집프로그램, 임차료 등): 122백만원

- 공공운영비(공공요금, 저작권료 등): 164백만원

- 청소용역비 등 : 45백만원

나.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: 45백만원

- 행사운영비(기획전 등): 27백만원

- 강사수당 : 18백만원

다. 기타 : 32백만원

- 시설물 응급 보수 : 10백만원

- 전산개발비 : 22백만원

○ 2, 3, 4, 5차년도 : 매년 물가상승률 3% 반영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	비						0
도	비						
시	비	558	574	591	608	626	2,957
합	계	558	574	591	608	626	2,957

6. 부대의견

- 세출 예산은 추정비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
- 7. 작성자 :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계 박현정(054-480-6622)

ব	- 관 부 서	문화예술과
입	과 장	박 정 은
안	담 당	오 명 화
자	담 당 자	박 현 정 (480-6622)